

WTO/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 총괄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질의처 운영은 산업 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1996년 2월 공산품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질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007년 2월 2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털사이트 Know TBT(www.tbt.kr) → TBT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tbt@kats.go.kr)

통보문 통계

• 대상기간: 2011.5.16~5.22
• TBT 통보문 건수: 총 10개국 15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7개국 10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미국	3	70	미국	70
아랍에미리트	3	10	유럽연합	58
일본	2	8	브라질	46
덴마크	1	3	중국	46
말레이시아	1	7	캐나다	30
멕시코	1	30	멕시코	30
베트남	1	3	일본	8
스위스	1	3	합계	268
콜롬비아	1	9		
헝가리	1	1		
합계	15	144		

*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식약식품	6	24
생활용품	3	71
전기전자	3	68
건설	1	209
수송물류	1	43
에너지	1	78
합계	15	493

주요 내용

가. 1990년 전력공급법, 2011년 전력규제 수정안(G/TBT/N/MYS/24)
• 농 통보문은 ASEAN 10개국 간에 체결된 ASEAN FEEE MRA의 이행을 위한 말레이시아 1994년 전력규제의 개정에 관한 것임.

- 1994년 전력규제 Reg.97(1)은 에너지위원회의 COA(Certificate of Approval)를 받지 않고는 가정용 가전기기를 제조, 수입, 전시,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형식의 COA 신청서(Reg.97(2))를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ASEAN 10개국 간에 체결된 ASEAN EEE MRA는 회원국들로 하이급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상호 수용하는데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의 경우, 10개 회원국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인증서의 상호 수용의 경우,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2008년 기준).

나. 도로차량의 안전규제와 해당 규제의 세부사항 부분수정 (G/TBT/N/JPN/357)

- 동 통보문은 일본 정부가 UNECE 규정의 개정 사항에 맞게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안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일본은 58협정의 가입국으로서, 2011년 6월 23일부로 발효하는 개정된 UNECE 규정을 국내 규제에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맞추어 국내 기술규제를 개정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경우, UNECE Reg.12, 94, 95, 100를 반영하여 국내 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일반자동차의 경우, UNECE Reg. 16, 91, 119를 반영하여 개정함. 이외에도 버스의 경우, 개문발차 방지장치 장착 요건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기준이 있거나 국내기준이 없더라도 국제기준 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국제조화하고 있음. 하지만, 좌석안전띠부착장치, 연료장치와 관련하여 충돌시험기준과 전복시험기준 등이 북미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UNECE 규정(UNECE Reg. 16, 94, 95)과의 조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관한 UNECE 규정과의 조화 및 일본의 개정 안전규정과 동등성 인정에 관한 협의를 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상기간: 2011.5.23~5.29

• TBT 통보문 건수: 총 8개국 33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5개국 24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국가	건수
아랍에미리트	13	미국	75
미국	5	유럽연합	61
쿠웨이트	5	브라질	46
바레인	3	중국	46
유럽연합	3	캐나다	30
아르메니아	2	멕시코	30
네덜란드	1	일본	8
이스라엘	1	합계	296
합계	33		203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의약품	18	227
수송물류	5	77
화학세라믹	2	80
생활용품	1	72
바이오환경	1	8
농수산품	1	26
기타	1	7
기계	1	28
합계	33	525

가. [아랍에미리트] 다목적 차량, 트럭, 버스 및 트레일러 타이어(G/TBT/N/ARE/79)

- 동 통보문은 GSO가 TC No.2-1(킬프지역 자동차 및 타이어 표준 기술 소위원회) 기술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GSO 표준 No. 647/1996(다목적차량, 트럭, 버스, 트레일러 타이어)을 개정하여, Part 3: 일반요건의 적용대상에 기존의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새로이 경트럭, 대형트럭을 포함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임.
- 참조 표준으로는 GS 645/2009(다목적차량, 트럭, 버스, 트레일러 타이어) Part 1: 분류, 유형, 표시, 치수, 적재용량, 타이어압력과 GS 646/2009(다목적차량, 트럭, 버스, 트레일러 타이어) Part 2: 시험방법이 있음.
- 개정된 Part 3: 일반요건에 따르면, 타이어 치수 앞 또는 뒤에 각각 LT 또는 CR 표기되는 경트럭용 타이어는 최대 속도표기(L 또는 그 이상)가 병기되어야 함, 대형트럭용 타이어는 최대속도표기(K 또는 그 이상)가 병기되어야 함.

합, 경트럭 또는 대형트럭용 트럭타이어 범주에 속하는 타이어는 최대속도표기(G 또는 그 이상)가 병기되어야 함.

- GSO(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들의 국가표준화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특별기술위원회(TCs)를 통해 킬프지역의 표준 및 기술규정을 발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GSO에서 발행하는 표준 및 기술규정은 GCC 6개 회원국 내에서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됨.

나. [아랍에미리트] 인공착향료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GCC 기술규제초안(G/TBT/N/ARE/71)

- 동 통보문은 미탄산 인공착향료에 관한 표준안을 통보한 것으로 관련 참조표준으로 GSO 1, 20, 21, 22, 149, 150, 242, 244, 707, 840, 1016이 있음.
- 향료의 품질요건은 GSO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타민과 미테알은 WHO 권고수준(일일 필요량)을 초과해서는 안됨. 라벤필요건은 GSO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공착향료'로 표기되어야 함. 성분표시는 100ml당 표시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포장단위로 표시함.
- GSO는 GCC 회원국들의 국가표준화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서 특별기술위원회(TCs)를 통해 킬프 표준 및 기술규정을 발행하는 것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함. 따라서 TC No.(5) (식품 및 농산품의 표준 기술위원회)의 GSO 표준(인공착향료)은 GCC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대상기간: 2011.5.30~6.5

• TBT 통보문 건수: 총 6개국 11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4개국 9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건수
브라질	4	50	미국	75
베트남	2	5	유럽연합	61
스웨덴	2	4	브라질	50
네덜란드	1	2	중국	46
대만	1	7	캐나다	30
태국	1	25	멕시코	30
합계	11	93	일본	8
			합계	300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건설	4	28
식약품	4	231
기타	2	9
정보디지털	1	9
합계	11	277

주요 내용

가. [태국] 라이선싱의 검사기준 제정에 관한 태국 산업기준원의 통지(G/TBT/N/THA/383)

- 태국 공산품표준법(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은 국민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주요 물품의 규격 등 표준을 정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수입, 제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는 태국산업표준연구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이 담당하고 있음.
- 동 통보문은 TISI가 제품 허가를 위한 검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TISI는 태국의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TISI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음.
- 통보된 제품 인증 기준은 첫째, 제품이 적용가능한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둘째,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조업자는 적절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이와 같은 인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 부여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전검사와 사후감독을 통한 TISI 제품인증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 사전검사는 제조업자의 품질관리시스템 평가와 제품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ISO9000 인증을 획득한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시스템 평가를 면제받으나, 동 ISO9000 인증은 태국 국가인정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ONAC) of Thailand) 인증을 획득한 ISO9000인증기관 또는 공산품표준위원회(Industrial Product Standards Council) 승인을 받은 ISO9000 인증기관이 발행한 ISO9000 인증이어야 함.
- 제품평가는 관련된 특정 제품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한 것임. 첫째, 제품 샘플은 TISI 지정 시험소 또는 공산품표준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험인정기관 또는 태국 시험소인정체제(Thai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TLAS))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에서 시험됨. 둘째, TISI 담당관의 감독하에 대상 공장의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샘플 시험을 실시함. 셋째, 공산품표준위원회 승인을 얻은 시험소가 수행한 제품시험을 거친 제조업자는 당해 시험보고서로 시험을 면제받음.
- 사후감독은 인증제품의 표준 부합여부와 제조업자의 동 제품에 대한 품질 유지 여부를 감독함. 사후감독은 정기

및 부정기로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은 허가들 획득한 자가 계속해서 표준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TISI 담당관이 감독하는 것을 말함. 부정기적인 감독은 제조, 수입, 판매 장소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감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표준 준수여부와 표준마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산품표준법(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위반행위를 적발함.

통보문 통계

- 대상기간: 2011.6.6~6.12
- TBT 통보문 건수: 총 10개국 26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7개국 11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유럽연합	8	69	미국	79
미국	4	79	유럽연합	69
칠레	4	24	브라질	51
우크라이나	2	12	중국	47
캐나다	2	32	캐나다	32
한국	2	18	멕시코	30
뉴질랜드	1	4	일본	8
브라질	1	51	합계	316
오만	1	16		
중국	1	47		
합계	26	352		

*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식약품	11	242
화학세라믹	6	85
수송물류	3	80
생활용품	2	74
전기전자	2	80
기계	1	29
기타	1	10
합계	26	600

주요 내용

가. [EU]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전자 양식으로 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EU위원회 규제안(G/TBT/N/EEC/381)

- 동 통보문은 의료기기의 설명서 양식을 서면 양식에서 전자식 양식으로 대체하는 요건에 관한 것임.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구나 부속기기에 대해서 전자식 양식으로 서면 양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서면의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또한 전자식 정보제공에 따른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 정보의 EU 언어로의 제공 분께에 따른 번역료 등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정보 갱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임.

나. [중국] 신규 화장품 성분의 적용 및 평가에 대한 지침 (G/TBT/N/CHN/821)

- 본 통보문은 새로운 화장품 원재료의 시험 및 신고 방법을 정한 것임. 대상 물질은 새로운 화장품 원료로서, 천연 및 인공물질을 포함함.
- 새로운 화장품 원료에 적용되는 새로운 독극물 테스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됨:
 - 1) 급성 경구 및 급성 피부 독성 시험, 2) 피부 및 급성 안구 자극/부식성 시험, 3) 피부 알레르기 테스트, 4) 피부 광독성 및 광민감도 시험 (원재료의 자외선 흡수특성 시험), 5) 변이원성시험 (직소 하나씩 유전자 변이 및 염색체 변이 테스트를 포함해야함), 6) 만성 구강 및 피부 독성 시험, 7) 기형 시험, 8) 만성 독성 / 발암성 시험, 9) 독극물 대사 및 운반역학 시험, 10) 원료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른 필요한 검사를 고려함
- 동 통보문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화장품 원재료에 대해서는 10여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원료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몇 가지 테스트를 더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원재료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과정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에는, 라이선스 신청서 외에도 개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개발보고서에는 원재료의 이름, 출처, 분자량, 분자식, 화학구조, 물리적, 화학적 특성, 생산공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의 소지도 내포하고 있어 필요한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민감하거나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대상기간: 2011.6.13~6.19

• TBT 통보문 건수: 총 11개국 47건

(부록 · 수정문 제외, 기술규제 · 개정 11개국 37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바레인	14	18	미국	87
미국	8	87	유럽연합	70
브라질	6	57	브라질	57
중국	5	52	중국	52
이스라엘	4	31	캐나다	33
키르기스스탄	3	6	멕시코	30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태국	3	28	일본	8
말레이시아	1	8	합계	337
사우디아라비아	1	47		
유럽연합	1	70		
캐나다	1	33		
합계	47	437		

*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류	건수	누계
식의약품	23	205
전기전자	7	87
화학제라믹	5	90
수송물류	4	82
농수산물	3	29
정보통신	2	2
규제제도	1	2
생활용품	1	75
에너지	1	45
합계	47	679

가. [중국]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안전 요건 사항(G/TBT/N/CHN/822)

- 본 통보문은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 장비의 안전 요건 사항에 관한 최종 법률안을 통보한 것임. 안전 기준의 적용 범위는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원격전원공급시스템, 오디오, 비디오 등과 이들 장치와 함께 사용되는도록 설계된 장비 등임.
- 동 안전기준은 가정용 전자장비와 학교,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장비에도 적용됨. 안전기준의 도입 목적은 감전, 고온, 방사선, 폭발, 기계적 위험, 화재 등으로부터 부상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기준(IEC 60065: 2005, MOD)이 참조 표준으로 제시되어 있음.

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정보기술 기기 -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건 사항(G/TBT/N/CHN/826)

- 본 통보문은 정보 기술 장비의 일반 요건 사항에 관한 최종 법률안을 통보한 것임. 안전성에 관한 제1부의 요건은 전기사업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보 기술 장비에 적용됨.
- 적용되는 정보 기술 장비는, 전원공급방식과 관계없이, 통신 단말장비 및 통신 네트워크장비, 장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보조로 사용될 장비, 정보 전송 매체로 사용하기 위한 AC 전원 공급장치에 적용됨.